

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【2022. 9. 13.(화) 10:00】

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
검 토 보 고 서
(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)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행 정 · 재 무 위 원 회

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

(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)

검 토 보 고

2022년 9월 13일

전문위원 장 석 현

1. 기금 설치 개요

- 기 금 명: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
- 설치근거: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- 설치목적: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·운용을 통한 노후화된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 추진
- 설치년도: 2015년
- 소관부서: 문화체육과

2.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금명	2021년도 말 조성액	2022년도 조성계획			2022년도 말 조성액
		수입(A)	지출(B)	증감(A-B)	
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	12,807,955	4,212,947	17,020,902	△12,807,955	0

3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◆ 기금운용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기정액	비교증감
합 계	17,020,902	17,417,444	△396,542
전입금	4,000,000	4,000,000	0
예치금회수	12,807,955	13,267,444	△459,489
이자수입	212,947	150,000	62,947

○ 수입계획의 변경은

기정액 174억 1,744만 4천원 대비 3억 9,654만 2천원이 감소한 170억 2,090만 2천원으로 예치금회수에서 4억 5,948만 9천원이 감소하고 이자수입에서 6,294만 7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함

◆ 기금운용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기정액	비교증감
합 계	17,020,902	17,417,444	△396,542
비용자성사업비	17,020,902	17,330,000	△309,098
예치금	0	87,444	△87,444

○ 지출계획의 변경은

기정액 174억 1,744만 4천원 대비 3억 9,654만 2천원이 감소한 170억 2,090만 2천원으로

- 비용자성 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감리비로 2억 909만 8천원 감액,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을 감액 총 3억 909만 8천원 감액
- 예치금 8,744만 4천원 전액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임

4. 종합의견
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측치로 작성된 수입계획을 2021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4억 5,948억원 9천원을 감액하고, 이자수입 6,294만 7천원을 증액하여 총 3억 9,654만 2천원을 감액하고자 제출된 안건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¹⁾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%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
-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(예치금)에 대한 지출액이 당초 8,744만 4천원에서 100% 감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강서구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
-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제도이지만,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의 임의변경 비율을 정하고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임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< 예산과 기금의 비교표 >

구 분	일 반 회 계	특 별 회 계	기 금
설치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 ▪ 특정사업 운영 ▪ 특정자금 보유 운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목적 및 시책 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
재원조달 및 운용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출연금,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용자사업 등 수행
확정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부서 예산요구, 예산부서 예산안편성, 지방의회 심의·의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·조정, 지방의회 심의·의결
집행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-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집행과정에서는 합 목적성 차원에서 자율 성과 탄력성이 보장
수입과 지출의 연 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한 수입과 지출 의 연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
계획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추경예산 편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요항목(분야·부문·정책사업) 지출금액의 20%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
결 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방의회 심의·승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좌 동